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 2009. 4. 24 조례 제1004호
일부개정 2013. 7. 5 조례 제1310호
일부개정 2015. 12. 15 조례 제1533호(제명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청소년의 미래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12. 15]

제2조(설립)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개정 2013. 7. 5, 2015. 12. 15〉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3. 7. 5, 2015. 12. 15〉

1.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2. 청소년보호·복지에 관한 사업
3. 용인시(이하"시"라 한다)가 설립한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4. 건전한 청소년육성과 그 밖에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청소년육성·보호·복지를 위하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개정 2013. 7. 5, 2015. 12. 15〉

② 시는 재단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15. 12. 15〉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5〉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위원회에 관한 사항
8.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사업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의 정관을 제정·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용인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12. 15〉

제6조(임원 등)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개정 2015. 12. 15〉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을 따른다.〈개정 2015. 12. 15〉

제7조(이사회)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 12. 15〉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 12. 15〉

제8조(위원회) ① 재단의 공개적이고 전문화된 경영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5. 12. 15〉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 12. 15〉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과반수가 요청할 때에는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5. 12. 15〉

④ 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 12. 15〉

제9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개정 2015. 12. 15〉

제10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에 수입금으로 충당한다.〈개정 2015. 12. 15〉

제11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개정 2015. 12. 15〉

제12조(사업계획과 예산·결산)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5. 12. 15〉

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의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5〉

제13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 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개정 2015. 12. 15〉

제14조(보고, 검사, 감사) ① 시장이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검사·감사를 요청할 때에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5〉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5. 12. 15〉

제15조(공무원의 파견 등) ①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12. 15〉

② 시장은 재단운영·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감독 공무원에게 조사 또는 감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12. 15〉

[제목개정 2015. 12. 15]

제16조(운영규정) ① 재단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과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 따로 정한다.〈개정 2015. 12. 15〉

② 재단은 위탁받은 시설 또는 운영 등에 대하여 재위탁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청소년시설의 주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식당, 매점 등 부대시설에 한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거쳐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개정 2015. 12. 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7. 7. 5 조례 제1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15 조례 제15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